

의안번호 2674

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2674호, **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1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II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- 가.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증액되어 2021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변경내역 : 총 1개 세부사업, 1,593백만원 증액

(단위 : 백만원)

정책사업 / 세부사업	조정내역		
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
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	10,743	12,336	1,593
일반예산(재무활동)	5,202	6,795	1,593
여유자금 예치	5,202	6,795	1,593

나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〈수입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
계	10,743	12,336	1,593
이자수입 (공공예금)	197	197	0
융자금 원리금회수	2,038	2,038	0
예치금 회수	8,255	9,848	1,593
예탁금 이자수입	253	253	0

〈지출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당초(A)	변경(B)	증 감 (B-A)
계	10,743	12,336	1,593
사회복지 사업보조	700	700	0
민간융자금	4,800	4,800	0
일반운영비	41	41	0
예치금	5,202	6,795	1,593

Ⅲ. 검토의견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'2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 15억 9,300만원을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(15억 9,300만원)에 반영하고, 수입계획과 연동된 지출계획중 여유자금예치(9억 4,800만원)에 지출계획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1)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,
 - 「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 2)에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 금액이 변동되어 지출계획중 예치금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재무활동의 20%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

 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**일반예산(재무활동)**이 당초보다 30.6%, 15억 9,300만원 증액요청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로부터 의결이 필요한 사항임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2) 행정안전부, 「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('20. 7), p.43, p.303

〈표 3-1〉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 사업 / 단위 사업 / 세부 사업	당 초 (A)	기금 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계	10,743	12,336	1,592	-
행정 운영 경비	41	41	-	-
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 지원	5,500	5,500	-	-
일반 예산 (재 무 활 동)	5,202	6,795	1,592	30.6
보 전 지 출	5,202	6,795	1,592	30.6
여 유 자 금 예 치	5,202	6,795	1,592	30.6

※ 백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 것임

자료근거 : 서울특별시, 장애인복지정책과-15007('21. 8. 23) 재구성

○ 아울러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, '2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지출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의 조성액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으로

- 동 계정의 설치근거인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³⁾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과 같이 예치후 필요시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3)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 제6조(장애인복지계정)

②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
2. 장애인단체의 지도·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
3.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
4. 장애인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
5.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
6.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 지원
7.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
8.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